

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

협회지 제 77-1호 2004년 01월 16일(금)

☒ 등급판정수수료 세금계산서발행의 건

-1/16일 재정경제부방문 보고-

-등급판정수수료 세금계산서발행을 등급판정소가 하도록 하는 질의서의 답변이 차일피일 늦어져 신고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협회 전무가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였습니다.

-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담당최낙경씨를 만나 늦어지는 이유와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

1, 늦어진 이유 : 국세청에서 등급판정소에 답변한 예규사항이 재정경제부 담당자인 본인의 의견(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급판정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)과 상충하여 국장님이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며,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하며,

2, 대책(답변)

① 1/25일 신고기간 지난후라도 수정신고기간이 있으니 재경부 답변자료로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.

-신고누락으로 인한 과징금은 신고금액의 1%라고 합니다.

② 경과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시면 2003년도는 신고하시고, 2004년도분 부터는 재정경제부 답변에 따르는 방법